新 電 氣 事 業 法

制定作業의 顚末(Ⅲ)

昔成煥 • 韓電・永登浦支店
企劃室長
(前)法令整備擔當役

3) 電氣事業法 施行規則

全文 68條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다. 母法을 몸통으로, 施行令을 肢體로 比喩한다면, 商工部令들은 손가락·발가락에 비길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 施行規則이야말로 가장 實效性있고 敏感이 예민한 中樞的인 附屬法令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面에서는 母法보다도 더 많은 關心이 集中될것이다. 그것은 母法이야 基本法이므로 變動이 잦을수가 없지만 商工部令은 隨時로 變動이 可能하고, 또 枝葉末端의 文句하나가 變動되므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全體의 體制가 뒤흔들리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具體的인 內容을 살펴보면

① 電氣工作物의 區分에 있어서 一般用과 自家用의 區分 限界(1條2項)

② 大容量 電氣使用 豫定者의 電氣事業者에 對한 通知時期(22條)

③ 「工事」에 對한 保安規制에 있어서 그 對象·節次·規制方法·基準(電氣事業用에 있어서는 26條 乃至 44條 및 別表, 自家用에 있어서는 55條 乃至 57條 및 別表)

④ 電氣事業者와 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者의 保安規程의 作成要領(45條)

⑤ 保安擔當者를 選任하여야될 設備 또는 事業場과 保安擔當者의 技術資格種別과 級數(47條)

⑥ 保安擔當者의 兼任許容條件, 無免許者의 保安擔當者 選任要件, 保安擔當者 選任義務 免除條件(47條2項, 58條, 59條)

⑦ 主任技術者(電氣技師·보일러 터어빈 主任技術者·댐 水路主任技術者)가 擔當施行 할수있는 工事等의 範圍(51條)

⑧ 一般用電氣工作物에 對하여 電氣事業者가 調査業務를 遂行하는 時期(52條)

⑨ 指定調査機關 指定의 基準(61條)

⑩ 電氣工作物 檢査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資格基準(68條)

⑪ 各種 書式等이다.

4) 電氣事業 會計規則

全文 67條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다. 電氣事業을 規制함에 있어서 그 基礎가 되는 經理面을 把握하고 規制할 必要가 있다. 더구나 여러 種類의 電氣事業者가 있을 경우에는 그 處理方法을 統一할 必要가 있다. 本規則의 當初의 制定目的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母法의 制定過程에서 國有財産을 管理하는 財務部側의 強硬한 反對로 因하여 不得已 母法 第28條에서 二元的인 規制를 하게되었다. 따라서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 電氣事業者」를 本規則의 直接適用對象에서 除外 시킴으로써, 이제는 「京仁에너지 開發株式會社」만이 唯一하게 本規則의 適用을 받게 되어서, 적어도 外形上으로는 當初의 目的은 變質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着眼된것이 實質的인 內容의 統一이다. 即, 形式的으로는 비록 電氣事業者들의 會計處理 準據가 다를지라도 事實上 그 모습을 같도록 함으로서, ① 「政

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韓國電力株式會社와 水資源開發公社, 그리고 ②「本規則의 直接 適用을 받는」京仁에너지 開發株式會社가 모두 滿足할 수 있는 規程을 制定하도록 勞力 하였다.

여기서 着眼된것이 「實質的인 內容의 統一이다. 即 形式的으로는 비록 二元化되어서 電氣事業者들의 會計處理 準據가 다를지라도 事實上 그 모습을 같게 하므로서 實質的으로 會計制度를 統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本規則의 直接 適用을 받는 「京仁에너지 開株式會社」나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 「韓國電力株式會社·水資源開發公社」 모두가 採擇하는 경우에, 根據法規는 如何튼, 모습을 같게하는데 無理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韓電의 會計規程을 model로 使用했다. 따라서 本會計規則은 어떤 企業體의 角度에서 보더라도 모두 慣狀이 容易하도록 된것이다. 이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 政府投資機關인 電氣事業者의 會計規制 法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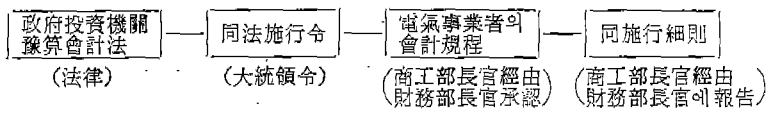

○ 民營電氣事業者의 會計規制 法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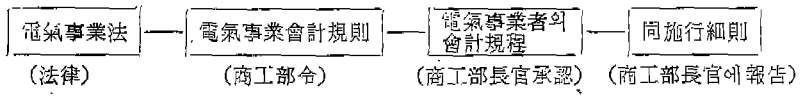

舊法時代에도 電氣事業者의 會計를 規制하는 法令인 電氣事業會 計規程(閣令 第582號, 62.3.27)이 있었다. 그러나 이規程은 不過個條文의 貧困한 內容이어서, 急大하여진 事業規模와 複雜하고 細分化되는 規制對象을 到底히 감당할수가 없어서 事實上 死文化되어 있었다.

그밖에 會計規則에 關하여 더욱 詳細한 內容에 對하여는 韓電·企劃管理部發刊「電氣事業會計規則 解說」(74.6.1)을 參考하기 바란다.

5) 電氣關係報告規則

全文 9條 附則으로 構成되었다. 電氣事業關係(電氣의 生産·供給과 安全事故等)에 對한 規制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는 規制當局인 商工部長官이 무엇인가 基本資料를 必要로 하고있는데, 例컨대 各種安全事故에 關한 統計·全國의 發電設備(電氣事業用이거나 自家用이거나를 莫論하고) 現況·各種行政基礎資料等은 電氣行政의 必須資料가 되는것인데, 이들을 蒐集하는 方法은 아무래도 定期 또는 隨時로 報告書를 모으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國家가 國民들로 부터 報告書를 提出할 義務를 지우고저 할때에는 法令의 根據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母法 第73條(報告의 徵收)의 規定에 따라 이 部令을 制定한것이다. 따라서 이部令에 定한 報告를 提出하지 않을때에는 母法 第83條(罰則)의 規定에 依하여 3萬원 以上의 罰金에 處하게 된다.

過去에 電氣關係 行政統計가 未備했던데 比하여, 앞으로는 이規則에 힘입어 많은 發展이 期待된다.

6) 電氣事業法에 依한 主任技術者의 資格等에 關한 規則

全文 16條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內容은 主任技術者의 免許取得要件·節次·變更事項運營等이다.

① 電氣主任技術者制度가 우리나라에 들어온것은 日帝時代인 1932年度이다.

勿論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電氣工作物들이 外國人들에 依하여 設置·運用되어 왔지만, 法制가 未備되어 있었던 까닭에 朝鮮總督府에 依하여 電氣主任技術者 免許가 付與된 일은 없었다. (韓國人으로서 日本 其他 外國에서 免許를 取得한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別問題이다).

따라서 이땅에서 電氣主任技術者免許制度가 나타나게 된것은 朝鮮電氣事業令이 만들어진 以後에 그 施行規則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의 「電氣事業主任技術者資格檢定規則」이 準用되면서 부터이다.

② 그內容을 살펴보면 檢定(試驗檢定과 銓衡檢定)·그리고 資格認定의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試驗檢定은 第1次試驗(一般電氣學術과 應用에 關한 test과 第2次試驗(筆記試驗과 口述試驗)으로 나누어 施行하였는데 그應試對象은 正規의 電氣系敎育過程을 거치지 않은者가 該當되었다.

둘째, 銓衡檢定은 大學令(그當時의 敎育制度)에 依한 大學工學部에서 試驗檢定의 試驗科目을 履修한 경

우에는 書類審査만으로 第一種(경우에 따라서는 第二種)의 免許를 付與하였다.

셋째, 專門學校等 一定한 節次에 依하여 認定받은 學校의 卒業者에게는 第二種의 資格이 있는것으로 認定하고, 말하자면 免許를 自動取得하게 되었다.

넷째, 第二種의 免許를 取得한 者가 一定期間 責任있는 地位에서 電氣技術의 實務에 從事한 者는 第一種의 免許를 付與하였다.

그러나 解放과 더불어 이들 制度는 中斷된채 15年이 흘러갔다. 다만, 이期間에도 「朝鮮電氣事業令」은 살아있어서 電氣主任技術者를 選任하도록 되어 있어서 有資格者의 需要는 있으나, 供給이 없어서, 便法으로, 大學電氣科卒業者에게 免許없이 電氣主任技術者의 任務를 遂行하도록 許容하는 잠정制度를 두었었다.

③ 1961年 電氣事業法의 制定時에는 大統領令으로 「電氣主任技術者資格檢定規程」이 制定되어 비로소, 이름만이라도, 우리의 法制가 誕生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解放後 中斷되었던 資格付與制度가 再開되었고, 경과규정으로 과거 大學卒業者들에게는 無試驗銓衡의 機會를 두어 이들을 救濟하였다.

한편 이規程에서는 오로지 試驗檢定制度만을 두되 電氣關係學科 履修者만이 應試하고 筆記·口述試驗으로 나누어 施行하였다. 따라서 獨學者에게는 應試의 길이 막혔고, 또 實務經驗이 아무런 要件으로 되지 않으므로서 免許받은 者의 資質이 問題로 되었다.

④ 1973年의 新法制定時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되어서 가장混亂을 겪었다. (本誌 1975年9月號參照).

當初의 第1草案은 試驗檢定과 銓衡檢定을 同時에 採擇하였다. 이에 對하여는 여지껏 認定學校制度가 없었고, 銓衡만으로서 免許가 付與되면 不實한 免許가 量産될 우려가 있다는 與論이 支配的이고, 더구나 그前해인 1972年度에 施行한 3級試驗이 地方別로 施行된 結果 破行的인 結果가 나타났다하여 더욱더 無試驗에 依한 銓衡檢定에 대하여 反對의 소리가 높았다. 特히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現 大韓電氣技師協會)는 當時 5,000名에 達하는 會員中 相當數가 失職狀態인 點을 들어 免許發給의 愼重論을 펴므로서, 銓衡檢定制度는 削除하게 되고, 試驗檢定制度만을 남기게 되었다.

⑤ 한편, 檢定對象者 大部分이 現場實務經驗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檢定節次나, 免許付與 節次에서 이를 補完하는 制度가 없다는 것은 資格證의 資質이 問題로 되어왔다. 正確하게 말하면 電氣主任技術者로서 「電氣保安擔當者」에 選任된 者는 單純히 學術知識이 있는것만으로서는 不足하고「工事·유지·運用」의 全般에 걸쳐 技能과 人格의 側面에서도 現場從業員들을 指導할 수 있는 熟練된 者일것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現場實務經驗」은 學術知識에 못지않는 重要性을 가지는 要素이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 大學卒業者가 第1種免許 (우리의 1級에 該當)를 取得하기 爲하여서는 大學 (電氣工學專攻)卒業後 적어도 5年以上 大規模 電氣設備 (5萬볼트以上) 의 工事·維持·運用을 體驗하도록 되어있다. 極히 妥當한 制度이다. 이토록 重要한 實務經驗을 強化하기 위하여, 第2草案에서는, 學術知識은 筆記試驗과 口述試驗에 依하여 選拔하되, 日本에서와 같이 實務經驗(1級의 경우, 大卒者는 5年以上)을 거치도록 하였었다.

⑥ 그러나 이것또한 容易한 일이 아니어서 「너무 長期間이다」하는 意見들이 支配的이다. 그뿐만 아니라 5年間 實務를 遂行하였다는 確認을 누가 할것이며, 過然 信憑性이 어느程度이겠느냐 하는것이 問題로 되었다. 이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적어도 大規模 電氣工作物을 設置·運營하는 企業體라면, 그가 發行하는 文書에 信賴度가 깊을듯 한데, 旺年의 無數한 學歷·經歷 僞造事件等으로 미루어 볼때, 이것을 믿을 수 없어서 結局國家의 制度까지를 바꾸게 된것이다. 그래서 절충식으로 成案된 第3草案에서는 「指定된 機關」에서 1年間의 實務修習을 거치도록 한것이다. (施行令 第16條 第3項 參照).

한편, 이機會에 添言해둘것은 最近에 制定된 國家技術資格法의 施行에 따라

첫째, 電氣主任技術者의 資格名이 「電氣技師」로 바뀐것이다. 따라서 電氣事業法 및 本規則上의 用語도 모두 「電氣技師」로 바꾸어 읽어야 된다는 事實이다.

둘째. 國家技術資格法의 規定은 名稱의 統一과 免許付與要件으로서의 資格基準에 關하여서만 特別規定을 두었을 뿐이므로 電氣事業法의 餘他의 規定(例컨대 實務修習等)은 그대로 有效하다.

⑦ 從來 電氣事業法에서는 電氣工作物의 工事等에 있어서 保安擔當者로서 電氣系의 有資格者(電氣技師)를 選任하는 制度였다. 그러나 嚴格히 말해서 電氣工作物中에는 電氣的設備以外에 機械的設備(例컨대 火力發電所의 Boiler·turbine)과 土木設備(例컨대 水力發電所의 Dam·水路等)이 있으며 이들의 工事·維持·運用에 있어서는 電氣工學을 專攻한 技術者로서는 困難하다.

〈次號에 계속〉